##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83

발의연월일: 2021. 2. 8.

발 의 자:정점식·김형동·최형두

하영제 • 이명수 • 한무경

서일준 • 권영세 • 임이자

조수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하고, 동물 소유자등은 각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.

2019년 한국소비자연맹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다수가 진료행위 및 진료비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기 원함에도, 병원마다 진료행위 관련 용어 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 수도 권 내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진료비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1 8%에 그치는 등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실정임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하도록 하고,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알기 쉽게 고지·게시하도록 하는 한편,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현황에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·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과

정 및 진료비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(안 제20조의3, 제20조의4, 제20조의5 신설 및 제41조제2항).

##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0조의3(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표준화 및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- 제20조의4(진료비의 게시 등)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다빈도 진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알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.
  - ②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때에는 동물소유자등이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 및 고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의5(진료비의 현황 조사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의 금액, 해당 진료비에 포함되는 진료항목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(이하 "진료비의 현황 조사"라 한다)

및 공개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료비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 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의 현황 조사 및 공개의 범위,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41조제2항제6호의3을 제6호의5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의3 및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의3.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
- 6의4. 제20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0조의3(동물의 진료항목 표준
	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
	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
	위하여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
	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
	고시하여야 한다.
	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
	진료의 표준화 및 그 활용을
	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
	<u>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20조의4(진료비의 게시 등) ①
	동물병원 개설자는 다빈도 진
	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
	지정하는 진료항목에 대한 비
	용을 알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
	<u>다.</u>
	②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
	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때에
	는 동물 소유자등이 지불할 것
	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고
	<u>지하여야 한다.</u>
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
	시 및 고지의 방법과 절차 등

<신 설>

제41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의5(진료비의 현황 조사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의 금액, 해당 진료비에 포함되는 진료항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조사(이하 "진료비 의 현황 조사"라 한다) 및 공 개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료 비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동물 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 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동 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의 현 황 조사 및 공개의 범위,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4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1. ~ 6의2. (생 략) 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
∠ λ]	서\
$\leq \Im$	一台ノ

<신 설>

6의3.(생 략)7. ~ 9.(생 략)③ (생 략)

- 6의3.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진 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게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
- 6의4.제20조의5제2항 후단을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6의5.(현행 제6호의3과 같음)
- 7. ~ 9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